

‘재외동포 비자 통합’ 석 달 만에 3만 6천 명 전환..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사상 첫 정부 예산 투입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전국적 동포 지원 체계 구축

법무부가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한 이후, 석 달 동안 3만 6천 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정착 수요에 맞춰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에 나섭니다.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중요해진 지역사회 맞춤형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전국 출입국 관서와 동포체류센터가 연계해 실행할 방침입니다.

※ 법무부는 2008년부터 국내 동포의 정착지원을 위해 동포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 등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음[(‘08년) 4개 → (‘26년) 37개]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무부의 동포 체류자격 통합 성과를 공유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법무부는 2월 12일(목) 동포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시행하였으며, 2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3개월 간 47,632명의 동포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고, 36,561명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동포체류지원센터는 동포 사회와 법무부의 동포 정부 정책을 잇는 중요한 거점임을 강조하며, “동포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제도 개선 사항이나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고 말하며, 동포의 체류자격(F-4) 통합 이후 동포들의 사회통합에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등에 의존해 운영하던 센터의 운영 기반을 안정화하고, 센터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정성호)은 “동포의 체류자격 통합 이후에는 동포의 사회 통합,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동포 맞춤형 교재 개발, 동포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현재 법무부가 실행중인 동포의 사회통합 정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동포체류지원센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목록

2. ‘동포 체류자격 통합’ 개요 및 성과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통합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2-2110-4143)
		담당자	사무관	김연우 (02-2110-4141)

붙임1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14개) 목록

(지정기간 : 2026.6. 1. ~ 2027. 6. 30.)

연번	센터명	대표자	주소 및 대표번호
1	경남이주민문화센터 라함	안 영	경남 김해시 서상동 156-1 2층 (☎ 055-311-5433)
2	고려인지원연대 "아리랑"	김종홍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1길 16, 2층(사동) (☎ 0507-1348-3475)
3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정노화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188-1, 2층, 3층(산본동) (☎ 070-4155-7979)
4	서평택다이룸센터	김대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70, 4층 (☎ 0507-1485-0165)
5	시흥세움센터	김양희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64, 403호(월곶동, 풍산프라자) (☎ 031-8042-6155)
6	양주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	백경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42번길 88, 1층, 2층 (☎ 031-837-1919)
7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박한교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1 (☎ 043-883-6727)
8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무한상상연구소)	강동구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165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성지관 329호 (☎ 032-835-8076)
9	(재)전북국제협력진흥원	김기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 063-280-6181)
10	케이글로벌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	한관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437, 3층(연수동) (☎ 070-8847-9191)
11	포승고려인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박준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70, 3층 (☎ 031-682-1715)
12	학교법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정희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영암관 508호) (☎ 031-467-8132)
13	함께하는글로벌센터	배경숙	부산 동래구 금강로 70, 5층(온천동, 참조은빌딩) (☎ 051-558-5629)
14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신상록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429번길 23 (☎ 031-544-0611)

붙임2

‘동포 체류자격 통합’ 개요 및 성과

□ 추진 배경

-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로 동포 차별 해소

□ 주요 내용

- 재외동포(F-4) 비자 통합

-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 적용,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중단

- 취업범위 확대

- 기존에 취업이 불가능했던 건설단순종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수동포장원 등 10개 직업에 대해 취업 허용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자격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5년	2026. 1월	2026. 2월	2026. 3월	2026. 4월	'26. 5. 12.
재외동포 (F-4)	556,288 (87.1%)	556,045 (87.2%)	556,211 (87.4%)	565,347 (89.0%)	582,808 (91.4%)	586,464 (92.1%)
방문취업 (H-2)	82,418 (12.9%)	81,770 (12.8%)	80,108 (12.6%)	70,431 (11.0%)	54,823 (8.6%)	50,343 (7.9%)
합 계	638,706	637,815	636,319	635,778	637,631	636,807

□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자격 비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구 분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대 상	외국국적동포 (단,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동포는 학력·소득·직업 등 추가요건 입증 필요)	중국 및 구소련 6개국* 동포(18세 이상)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체류기간	제한 없음(3년씩 연장)	4년 10개월
활동범위	취업 허용 (단순노무와 일부 서비스직업 제외) (법무부 고시로 규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단순노무 업종 *(위원장 : 국조실장, 인력부족,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선정)
취업신고 등	취업 신고 의무 없음 고용보험 임의가입	취업 신고 의무 있음 고용보험 의무가입